

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9. 7. 26 선고 2018가단1260 판결 [건물철거 및 토지인도]

전 문

원 고 A

소송대리인 공익법무관 김동재

피 고 1. B

2. C

3. D

4. E

5. F

6. G

7. H

8. I

9. J

10. K

11. L

변론 종결 2019. 6. 25

판결 선고 2019. 7. 26

주 문

피고들은 원고에게,충북 옥천군 M 전 1033㎡ 지상 별지 도면 ② 표시 블록조 스텔지붕 건물 33.

6㎡, 같은 도면 ① 표시 건물 10㎡, 같은 도면 ③ 표시 건물 10㎡ 를 각철거하고,위토지를 각 인도하라.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원고는 1988. 1. 27. 충북 옥천군 M 전 1033㎡(이하 '이 사건 토지'라 한다)를 매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옥천등기소 1988. 2. 5. 접수 제1117 호로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, N은 1983. 9. 9.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후 그 지상 별지 도면 ② 표시 블록조 스투트지붕 건물 33.6㎡를 매수하였고,그 후 이 사건 토지 지상에별지 도면 ① 표시 건물 10㎡ 와 같은 도면 ③ 표시 건물 10㎡ 를 각 증축하였다.

N은2003. 6. 14. 사망하여 피고들이 위 각 건물을 상속받았다.

피고들은 2011년부터 이 사건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.

피고들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위 각 건물을 철거하고,이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B, F, G, H, I, J, K, L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저伐호,제150조 제3항(자백간주에 의한 판결)

나. 피고 C, D, E

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(공시송달에 의한 판결)

판사 원운재

별지